

## 반갑다, 발달장애인법

이 책은 인터넷에서도 읽을 수 있으며,  
동영상으로 보거나 목소리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검색하세요.  
홈페이지 주소 [www.broso.or.kr](http://www.broso.or.kr)



한국장애인개발원

발달장애인을 쉽게 알려주는 책 『반갑다,  
발달장애인법』

발달장애인법  
을  
쉽게  
알려주는  
책



## 반갑다, 발달장애인법



**발달장애인법을  
쉽게 알려주는 책**

### 『반갑다, 발달장애인법』

발달장애인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입니다.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만들었습니다.

글씨, 그림의 뜻을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  
동영상으로 보거나, 목소리로 들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발달장애인뿐 아니라, 모두를 위한 책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쉽게 바꾸어나갈 것입니다.





발달장애인법을 쉽게 알려주는 책

# 반갑다, 발달장애인법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이 책은 인터넷에서도 읽을 수 있으며,  
동영상으로 보거나 목소리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검색하세요)  
홈페이지 주소 [www.broso.or.kr](http://www.broso.or.kr)



## 〈발달장애인법〉 소개

〈발달장애인법〉은  
발달장애인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서 만든 법입니다.

〈발달장애인법〉의 원래 이름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책에서는 줄여서 〈발달장애인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2015년 11월 21일부터  
〈발달장애인법〉을 지켜야 합니다.

### 법

---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함께 지키기로 약속한 것

## 『반갑다, 발달장애인법』은

- 1** 발달장애인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입니다.
- 2**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만들었습니다.
- 3** 글씨, 그림의 뜻을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 동영상으로 보거나, 목소리로 들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 4** 발달장애인뿐 아니라, 모두를 위한 책이기도 합니다.
- 5**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쉽게 바꾸어나갈 것입니다.

## 이 책의 순서

---

### **읽기 전에 알아두면 좋은 단어** 12

이 책에 자주 나오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알려줍니다.

### **발달장애인법 알아보기** 15

발달장애인법을 더 쉽게 알려줍니다.

- 1 발달장애인법은 왜 만들었나요?** 16
- 2 발달장애인법에는 어떤 내용이 있나요?** 18
- 3 발달장애인이 가진 권리는 무엇인가요?** 20
- 4 발달장애인법이 있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22
- 5 발달장애인법이 잘 지켜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42

---

## **쉽게 읽는 발달장애인법**

**44**

발달장애인법의 내용을 읽기 쉽게 다시 썼습니다.

##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113**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사람들에게 이 책을 소개합니다.





# 읽기 전에 알아두면 좋은 단어

이 단어들을 알면, 이 책을 읽기 쉽습니다.

발 달 장 애 인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

법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함께 지키기로 약속한 규칙

권 리

모든 사람이 갖고 있고, 누릴 수 있는 것

지 원

도와주고 힘이 되어 주는 것

보 장

어떤 일이 어려움 없이 이루어지도록 책임지고 지켜주는 것

존 중

소중하게 생각하고 대하는 것

결 정

어떤 것을 선택하여 정하는 것

의 사 소 통

서로 생각이나 느낌을 주고받는 것

정 보

책이나 신문, 텔레비전, 인터넷 등을 보고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실

복 지 서 비 스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 이용하는 서비스



# 발달장애인법 알아보기



이 책에서 우리나라는 2가지 뜻으로 사용됩니다.

1.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대한민국)
2. 나라의 일을 하는 모든 기관(정부)

# 1 발달장애인법은 왜 만들었나요?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지켜주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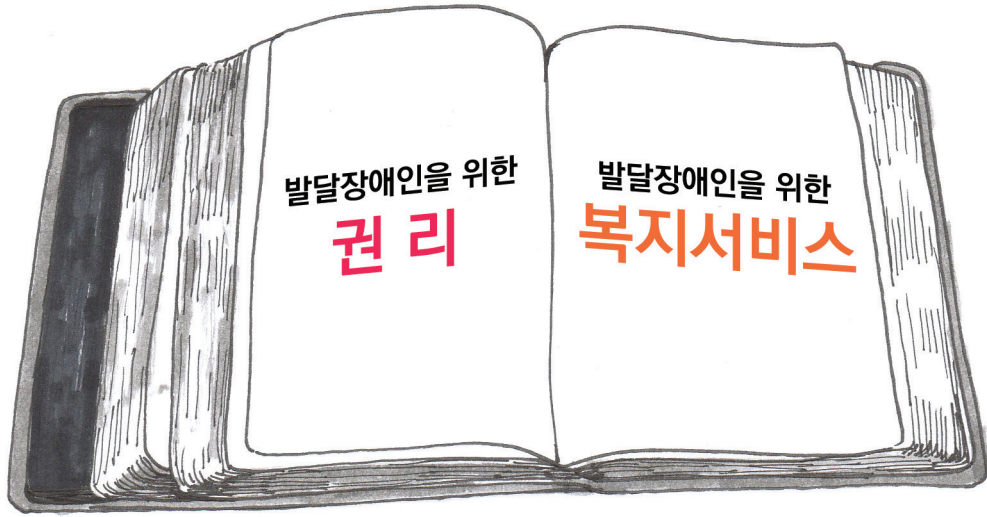
## 발달장애인법이 잘 지켜지면?

-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권리를 더 잘 누릴 수 있습니다.
- 발달장애인이 필요한 지원을 더 잘 받을 수 있습니다.
- 발달장애인이 사회 안에서 보다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 2 발달장애인법에는 어떤 내용이 있나요?

- 발달장애인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권리를 누리는 데 필요한 것
- 발달장애인과 가족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
- 위 2가지가 잘 이뤄지기 위해 필요한 것



### 3 발달장애인이 가진 권리는 무엇인가요?

발달장애인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 발달장애인은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 발달장애인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 누구나 똑같은 기회를 갖습니다.
-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자유롭게 전할 수 있습니다.
- 배울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우리나라에서 발달장애인에게 중요한 것을 정할 때,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습니다.



## 4 발달장애인법이 있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 스스로 정보를 이해하고,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잘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른 발달장애인들과 함께 ‘자조모임’을 만들 수 있습니다.
- 복지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지 계획해줍니다.
- 장애가 있는 것과 상관없이  
하루하루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 혼자 결정하기 어려울 때,  
후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발달장애인이 차별받거나 괴롭힘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누가 괴롭히거나 다치게 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발달장애인의 가족을 위한 서비스가 생깁니다.
- 발달장애인을 위한 기관이 생깁니다.

발달장애인법이 있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스스로 정보를 이해하고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잘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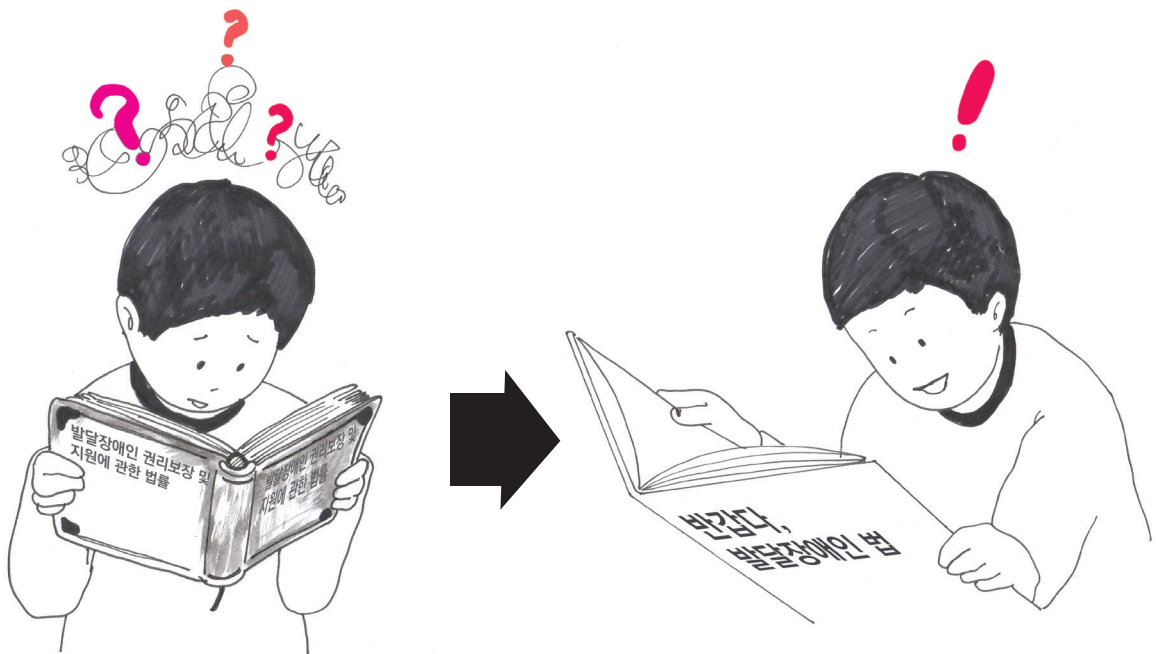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를 알려줄 때  
발달장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 **의사소통**

---

서로의 생각이나 느낌을 주고받는 것



의사소통을 잘 한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 전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나의 생각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 자세히 알고 싶다면 64쪽을 보세요.

발달장애인법이 있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 **다른 발달장애인들과 함께 '자조모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생각이 비슷한 발달장애인들이 모여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고, 하고 싶은 일을 함께 하는 모임을  
**자조모임**이라고 합니다.

여럿이 모이면 혼자일 때보다  
나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이 더 생기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자세히 알고 싶다면 66쪽을 보세요.

발달장애인법이 있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 복지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지 계획해줍니다.

내가 복지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지  
주민센터에 계획을 세워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계획을 **개인별지원계획**이라고 합니다.

### 개인별지원계획은

나에게 어떤 복지서비스가 필요하고, 얼마큼 이용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정하는 것입니다.  
개인별지원계획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세워줍니다.

####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우리 동네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기관  
사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서류를 발급해주는 곳

▶ 개인별지원계획을  
신청하는 곳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발달장애인을  
돕기 위해 만든 곳

▶ 개인별지원계획을  
세워주는 곳



**복지서비스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 장애인연금이나 수당, 교통비 할인
-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는 것
- 언어치료, 미술치료, 작업치료

▶ 자세히 알고 싶다면 83, 84쪽을 보세요.

발달장애인법이 있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 장애가 있는 것과 상관없이 하루하루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 발달장애인은 자신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재활치료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발달장애인은 자신이 아픈 곳을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발달장애인을 잘 이해하고 치료해주는 병원이 따로 정해집니다.(발달장애인을 위한 거점병원)
- 발달장애인은 자신이 가진 특징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  
나에게 맞는 재활서비스 신청하기



화요일 오후 3시  
거점병원에서 진료 받기



수요일 오후 1시  
사무보조 업무

- 발달장애인은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 발달장애인은 영화관, 미술관, 놀이공원 등에 가고 싶을 때, 원하는 축제, 행사가 있을 때 갈 수 있도록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목요일 오후 6시  
 평생교육기관에서 요리 수업 받기

금요일 오후 8시  
 친구와 영화 관람

발달장애인법이 있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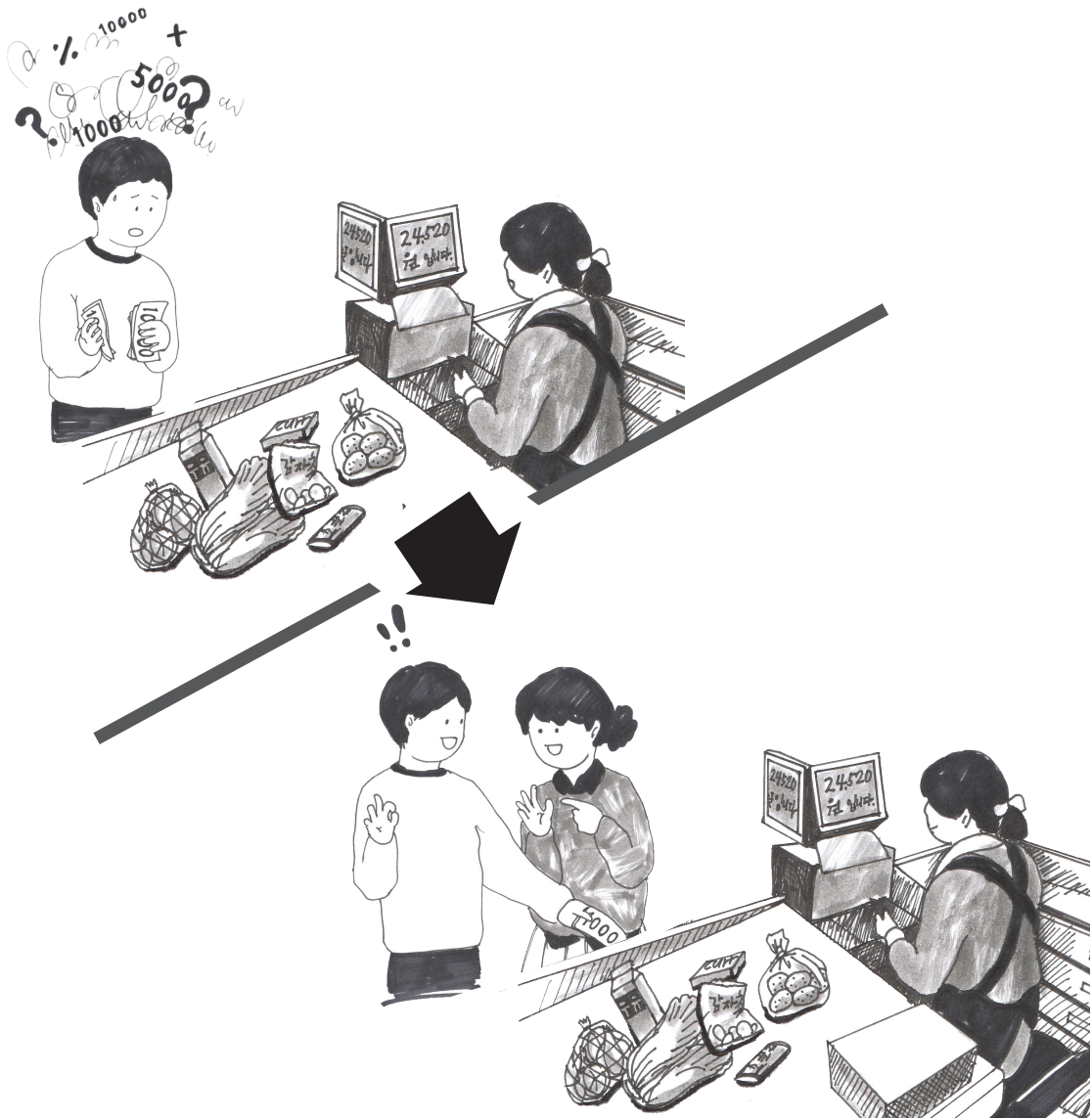
## **혼자 결정하기 어려울 때, 후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은 모든 일을 스스로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후견인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후견인**

---

중요한 것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



먼저 나에게 후견인이 정말 필요한지 잘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후견인은 나를 대신해서 중요한 일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와 어디에서 살지, 어떤 복지서비스를 받을지는  
 나에게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자세히 알고 싶다면 62쪽을 보세요.

발달장애인법이 있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 **발달장애인이 차별받거나 괴롭힘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발달장애인은 경찰서나 법원에 가야 할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찰관, 검사 중에는 발달장애인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을 전담 경찰관, 전담 검사라고 합니다.
- 경찰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범죄가 혹시 일어나지 않는지 조사해야 합니다.

### **범죄**

---

법을 어기는 것

잘못을 저질러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생기는 것



▶ 자세히 알고 싶다면 68~73쪽을 보세요.

발달장애인법이 있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 누가 괴롭히거나 다치게 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누가 나를 괴롭히거나 다치게 했다면 경찰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과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조사해야 합니다.

이때, 지낼 곳이 없거나 보호가 필요하다면  
위기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잠시 지낼 수 있습니다.



### 위기발달장애인지원센터

위험에 처한 발달장애인이 잠시 동안(7일~14일) 보호받을 수 있는 곳



###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 경찰서, 파출소 (☎112)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 자세히 알고 싶다면 74~79쪽을 보세요.

발달장애인법이 있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 **발달장애인의 가족을 위한 서비스가 생깁니다.**

- 발달장애인의 부모, 가족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하는 것
- 발달장애인의 부모를 위한 상담
- 가족이 함께 여행을 가거나 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 발달장애인의 동생, 형, 오빠, 누나, 언니를 위한 프로그램
- 발달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일찍 알 수 있도록 돕는 것

### **상담**

고민이나 속마음을 들어주고 이야기 나누는 것



▶ 자세히 알고 싶다면 103쪽을 보세요.

발달장애인이 있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 발달장애인을 위한 기관이 생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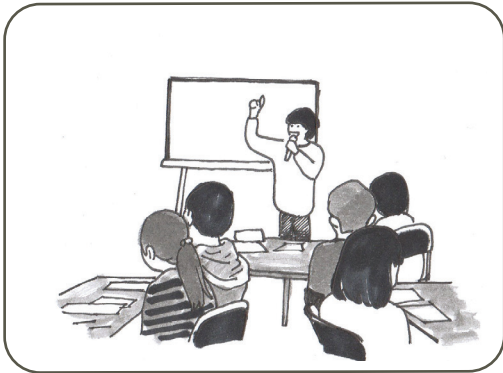
### 발달장애인을 위한 거점병원

발달장애인을 잘 이해하고  
치료할 수 있는 병원



### 위기발달장애인쉼터

위험에 처한 발달장애인이  
잠시 동안 보호받을 수 있는 곳



### 발달장애인을 위한

### 평생교육기관

학교 졸업 후에도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



### 발달장애인을 위한

### 직업재활시설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특징,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필요한 공부, 기술을 배우는 곳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발달장애인을 돕기 위해 만든 곳.

발달장애인과 가족은 지원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이곳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 5 발달장애인법이 잘 지켜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우리나라 국민 누구나  
발달장애인을 존중해야 합니다.
- 발달장애인 스스로  
자신의 권리에 대해 잘 알아야 합니다.
- 우리나라 각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발달장애인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 우리나라 각 기관은  
이 법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이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벌금을 내야 하는 경우

- 발달장애인이 괴롭힘 당했다는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꼭 신고해야 하는 사람: 사회복지사, 활동보조인, 의사, 소방대원, 교사(선생님) 등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사람
- 발달장애인에게 피해가 생겼을 때 조사받는 것을 거절하고 피하는 경우
- 발달장애인의 통장이 잘 관리되는지 조사받는 것을 거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내는 경우

# 쉽게 읽는 발달장애인법

발달장애인법은 1조부터 44조까지 있습니다.  
이 책에는 1조부터 34조까지의 내용만 있습니다.

## 조

---

‘조항’이라고 한다. 법의 내용을 나누는 기준이다.  
번호로 되어 있다.



## 1장

### 발달장애인법의 규칙(총칙)

발달장애인법의 모든 내용과 관련된 규칙들

# 1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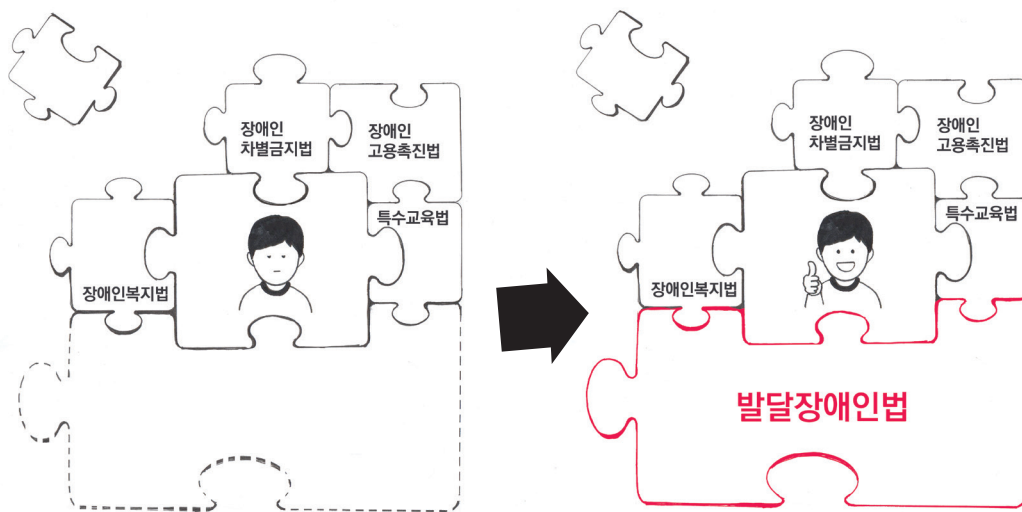
## 발달장애인법을 만든 이유

발달장애인을 지원하고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만들었다.

발달장애인이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들었다.

발달장애인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었다.

발달장애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



## 2조

### 발달장애인법에서 사용하는 단어

‘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을 말한다.

‘보호자’는 발달장애인의 부모나 가족, 후견인처럼  
발달장애인을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 후견인

---

중요한 것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

## 3조

### 발달장애인의 권리

발달장애인은 권리가 있다.

자신에 대한 일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자신의 생각을 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발달장애인에 관한 일을 결정할 때  
자신의 생각을 말할 권리가 있다.

나에게도  
권리가 있어!



## 4조

### 우리나라가 해야 할 일

우리나라는 발달장애인을 위하여 이런 일을 해야 한다.

발달장애가 있다는 것을 일찍 알 수 있도록  
필요한 방법을 찾아서 지원해야 한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연구와 조사를 해야 한다.  
또 발달장애인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더 좋은 환경을 만들고  
발달장애인 가족의 어려움을 덜어주어야 한다.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무엇인지 알려줘야 한다. 또 사람들이 발달장애인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지원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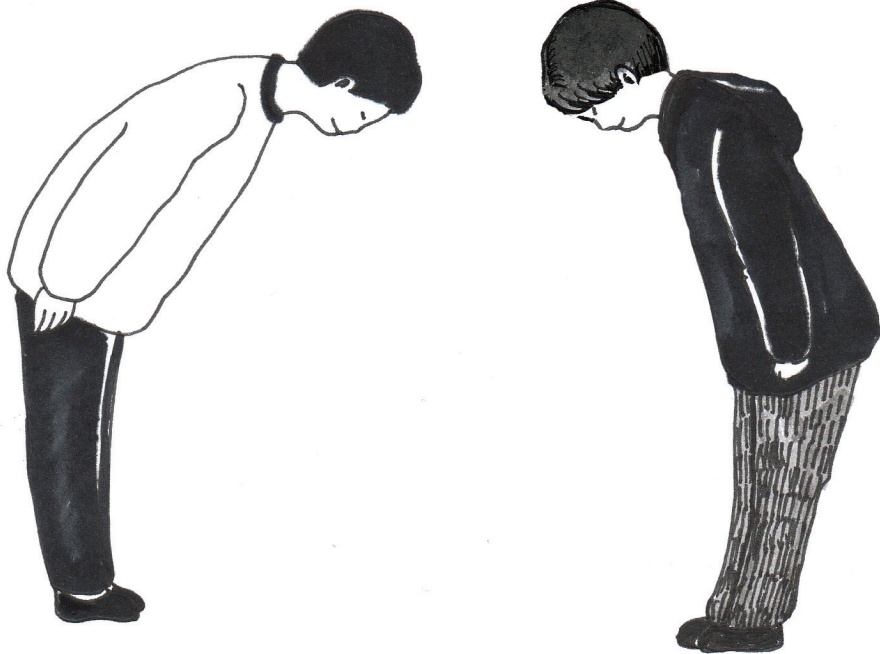


## 5조

### 국민이 해야 할 일

모든 국민은 발달장애인을 존중해야 한다.

또 발달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서로서로 도와야 한다.



## 6조

###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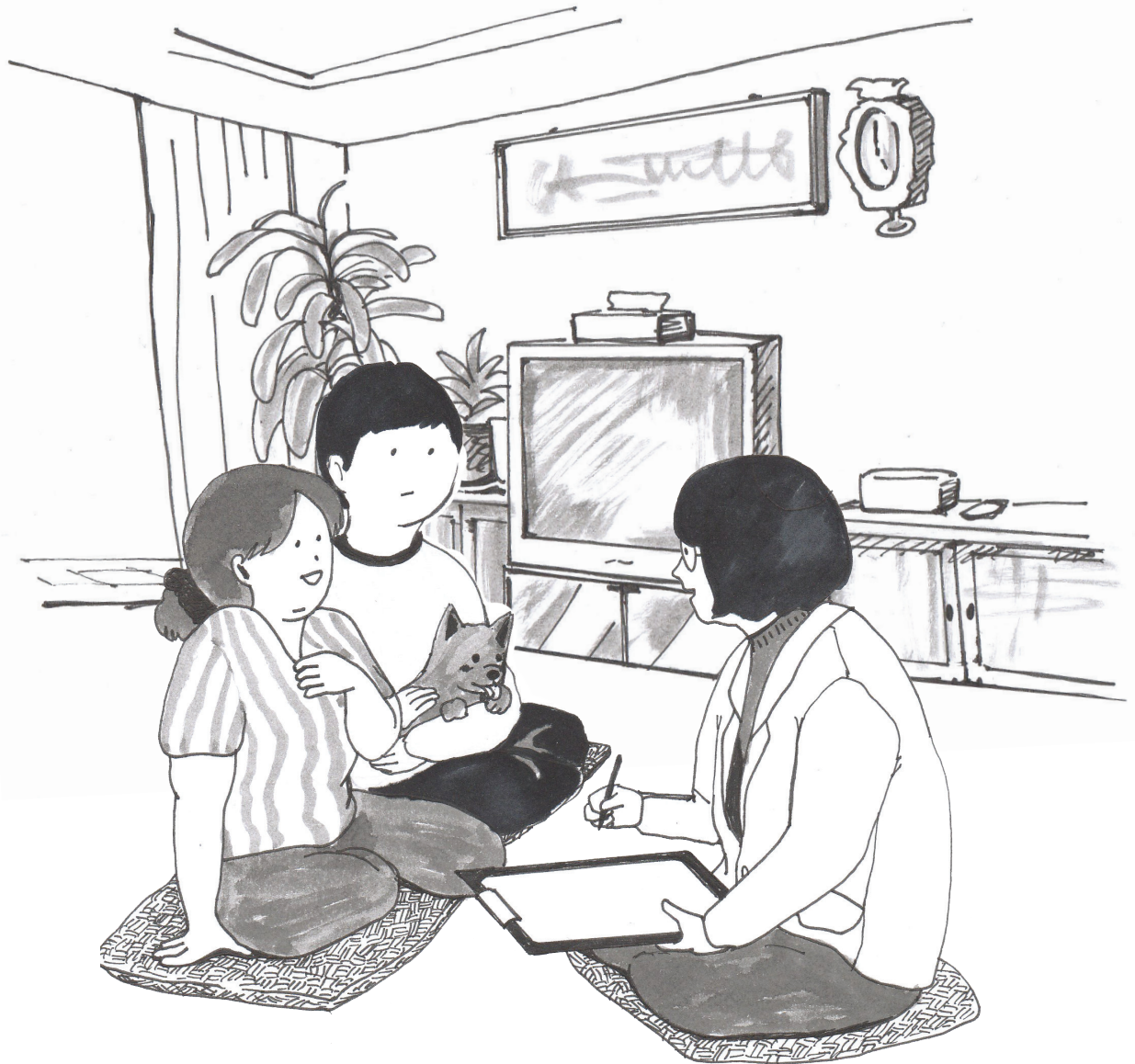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발달장애인 가족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3년에 한 번씩 조사해야 한다.

조사한 자료는 발달장애인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해 쓰인다.

### 실태조사

---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지,  
부족하거나 필요한 것은 없는지 자세히 살펴보는 것



## 7조

### 다른 법과의 관계

발달장애인에 대한 것은  
다른 법보다 이 법을 먼저 따라야 한다.



쉽게 읽는  
발달장애인법



## 2장

# 권리의 보장

## 8조

### 자기결정권의 보장

발달장애인은 자신에 대한 것을 스스로 결정한다.

- 살고 싶은 곳을 선택할 수 있다.
- 아플 때 치료받을 수 있고, 필요한 치료를 선택할 수 있다.
- 원하는 복지서비스를 스스로 골라서 이용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이 무엇을 결정할 때  
스스로 결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먼저 판단하면 안 된다.

발달장애인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울 때에는  
보호자가 도울 수 있다. 보호자는 결정을 도울 때,  
발달장애인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 자기결정권

---

나와 관련된 일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 9조

### 성년후견제 이용을 돕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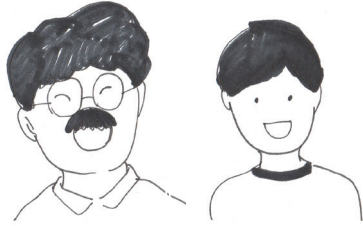
성인 발달장애인 중에서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운 사람은  
‘후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후견인’이 필요한 사람은  
시청, 군청, 구청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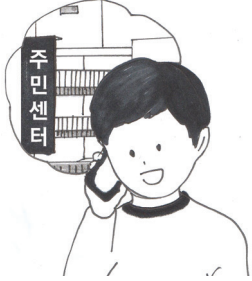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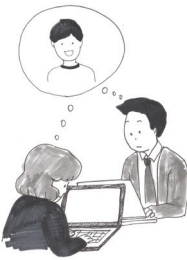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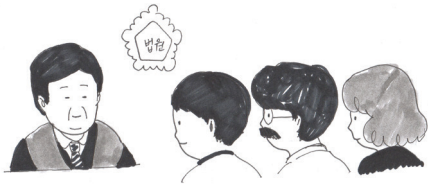
#### 성년후견제, 성인

---

- 성년후견제: 스스로 무엇을 결정하기 어려워서 도움이 필요한 성인이 후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한 법
- 성인: 나이가 19살이 넘는 사람



## 후견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p><b>1</b></p>  <p>주민센터에 후견인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p>	<p><b>2</b></p>  <p>후견인이 왜 필요한지 사회복지사에게 이야기하고, 후견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주민센터에서 받습니다.</p>
<p><b>3</b></p>  <p>나에게 후견인이 필요한 이유를 사회복지사와 변호사가 씁니다. 그리고 판사에게 보냅니다.</p>	<p><b>4</b></p>  <p>나에게 후견인이 필요한 이유를 판사가 확인하고 후견인을 결정합니다.</p>



### 후견인이 필요한 사람

- 무엇을 결정할 때마다 어려움을 느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자신의 생각을 대신 얘기해줄 가족이 없는 사람
- 다른 도움이 없으면, 피해가 생길 위험이 큰 사람

## 10조

### 의사소통 지원

우리나라는 발달장애인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서 나눠 주어야 한다.

#### 교육부는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생각을 잘 전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어야 하며,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해줄 사람을 교육시켜야 한다.

#### 행정자치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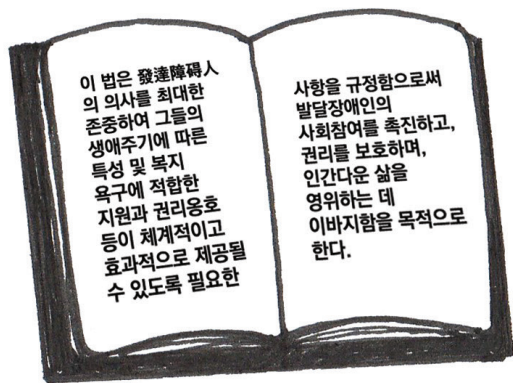
공무원들이 발달장애인의 생각을 잘 이해하고 대화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 교육부, 행정자치부

---

교육부 : 교육과 관련된 일을 하는 우리나라의 기관

행정자치부 : 나라의 살림을 맡아서 하는 우리나라의 기관



## 11조

### 자조모임을 만드는 것

발달장애인은  
자신의 권리를 누리기 위해 자조모임을 만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발달장애인 자조모임에 필요한 돈을 지원할 수 있다.



## 12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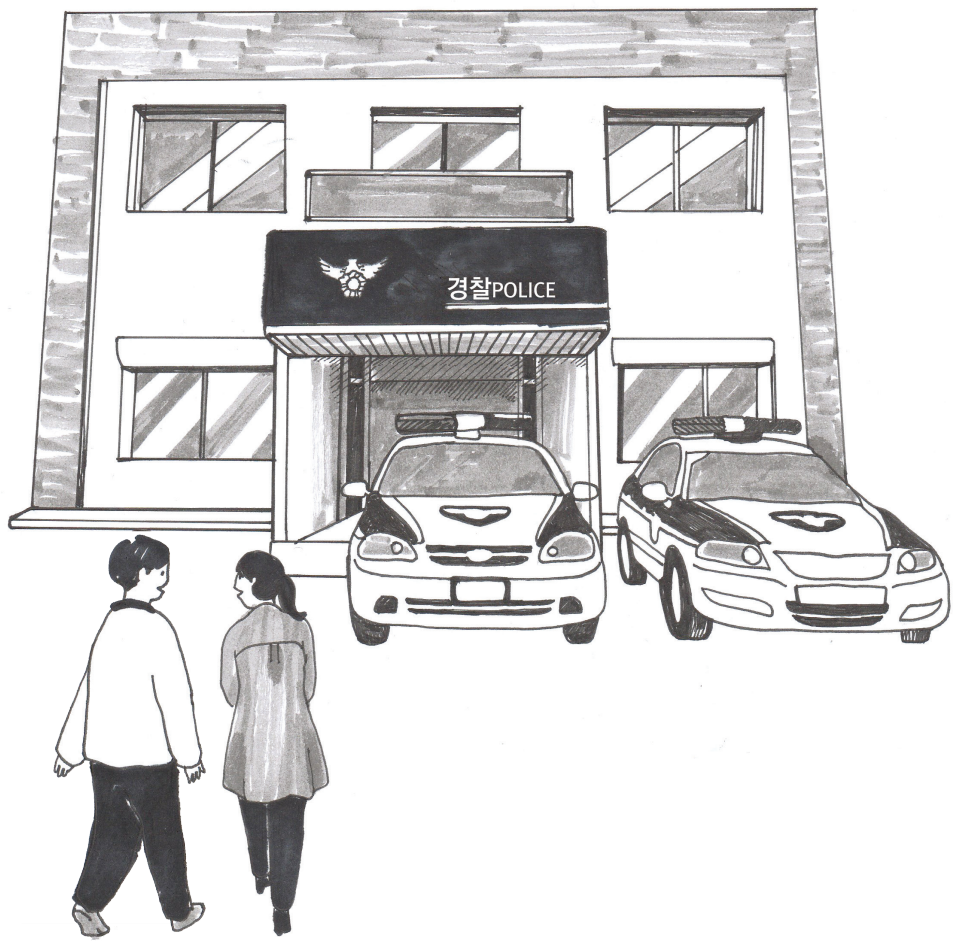
### 경찰조사, 재판과 관련된 권리보장

경찰은 발달장애인에 대하여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매년 교육을 받아야 한다.

발달장애인은 경찰조사나 재판을 받을 때 자신이 믿을 수 있는 다른 사람과 함께 갈 수 있다.



**경찰조사, 재판에 함께 갈 수 있는 사람**  
가족, 보호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 등



## 13조

### 발달장애인을 담당하는 경찰, 검사

발달장애인이 경찰서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발달장애인을 잘 이해하는 경찰관(전담경찰관), 검사(전담검사)가 조사해야 한다.

전담경찰관과 전담검사는 발달장애인을 이해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 검사, 검찰

---

검사: 범죄를 수사하는 사람

검찰: 범죄를 수사하는 우리나라 기관



## 14조

### 발달장애인에 대한 범죄를 막는 것

우리나라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법을 구하고 힘써야 한다.

경찰은  
동네나 마을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범죄가 일어나는지  
알아보고 조사해야 한다.



## 15조

### 신고해야 할 의무

발달장애인을 해치는 범죄가 일어나면  
누구나 경찰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 꼭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

사회복지사, 활동보조인, 의사, 소방대원, 교사(선생님) 등



## 16조

### 범죄가 일어난 곳을 조사하는 것

경찰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범죄 신고를 받으면  
곧바로 범죄가 일어난 곳에 출동해야 한다.  
그리고 범죄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다.



## 17조

### 위험에 처한 발달장애인을 보호하는 것

발달장애인은

자신을 해치거나 다치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위기발달장애인쉼터, 병원 등 안전한 곳에서 보호받아야 한다.

#### 위기발달장애인쉼터

---

위험에 처한 발달장애인이

잠시 동안(7일~14일) 보호받을 수 있는 곳



쉽게 읽는  
발달장애인법



## 3장

# 복지지원 및 서비스



## 18조

### 복지서비스의 신청

발달장애인은 복지서비스를 스스로 신청해야 한다.

발달장애인이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울 때에는  
보호자나 공무원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은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 계획을 ‘개인별지원계획’이라고 한다.

## 19조

### 개인별지원계획 세우기

발달장애인에게 맞는 서비스를 계획할 때에는  
오른쪽 그림과 같은 순서대로 한다.

# 1 나 (발달장애인)

계획을 세워주세요.



# 2 시청, 군청, 구청

이런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군요. 자세한 계획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부탁하겠습니다.



# 3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당신은 지금 이 서비스, 저 서비스가 필요해보여요. 이렇게 이용해보세요.



## 20조

###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돕기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에게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안내해야 하며,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알려주어야 한다.



## 21조, 22조

### 통장의 관리

발달장애인이 복지지원을 돈으로 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자기 이름으로 된 통장으로 받아야 하며 통장 관리도 발달장애인이 스스로 해야 한다.

발달장애인이 스스로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발달장애인의 보호자가 대신 관리해줄 수 있다. 보호자가 없으면, 시장이나 도지사가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아줄 수 있다.

다른 사람이 대신 통장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통장의 돈이 발달장애인을 위해 잘 쓰이고 있는지 시장이나 도지사가 확인해야 한다.

통장을 대신 관리하는 사람이 관리를 잘 못하면 다른 사람으로 바꿀 수 있다.



### 연금이나 수당을 관리하기 어려울 때에는

- 통장을 관리하기 어려우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통장 관리를 도와주는 사람이 잘 못하면 바꿀 수 있다.

## 23조

###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일찍 알 수 있도록 돕기

우리나라는 발달장애인이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일찍 알 수 있도록  
어린이의 부모에게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고,  
검사도구를 만들어야 한다.

발달장애가 혹시 있는지 알아보아야 하는 어린 아이는  
검사할 때 필요한 돈을 지원받을 수 있다.



## 24조

### 재활 및 발달 지원

우리나라는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을 따로 만들 수 있다.

남을 공격하거나 자신을 다치게 하는 행동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을 위해 행동발달증진센터를 만들 수 있다.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

발달장애인을 잘 이해하고 치료할 수 있는 병원



## 행동발달증진센터

남을 공격하거나 자신을 다치게 하는 행동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 25조

### 발달장애인이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우리나라는 발달장애인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야 한다.

발달장애인이  
직업을 갖기 위해 필요한 공부,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직업재활시설을 만들 수 있다.



## 26조

### 평생교육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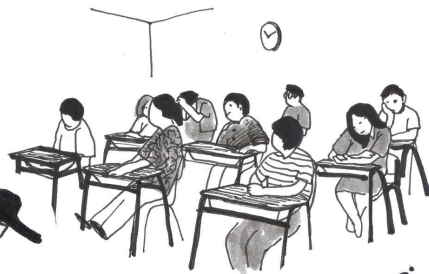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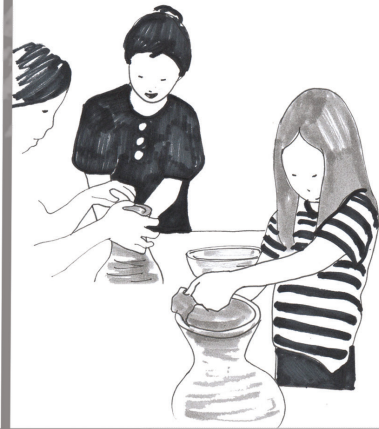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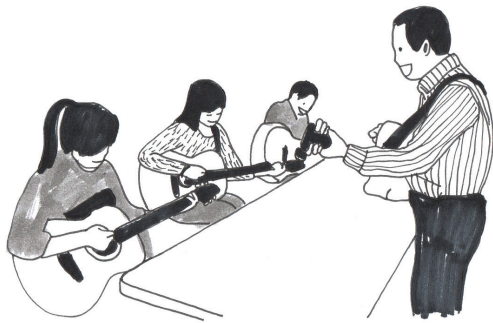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발달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기관을 만들어야 한다.

#### 평생교육기관

---

발달장애인이 학교 졸업 후에도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

# 평생교육기관



## 27조

###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등 지원

우리나라는 발달장애인이  
영화, 전시관, 박물관, 축제, 행사 등에 가서 볼 수 있게  
지원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이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시설, 놀이기구, 프로그램, 도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이 운동을 할 수 있는 행사나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 발달장애인이 말하는 자기만의 시간

- 내 방에서 텔레비전 보고, 컴퓨터 하고
- 자유롭게 한다는 것
- 날 따뜻하면 배드민턴을 치든가

## 28조

### 발달장애인이 잘 살 수 있도록 돕는 것

우리나라는 발달장애인이  
돈 걱정 없이 잘 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발달장애인이 말하는 돈 걱정 없는 생활

- 요금 폭탄 걱정 없이 여유 있게 사용하는 것
- 집 있고 병원비 걱정이 없어야 하고, 먹는 것 해결되는 정도
-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고, 다양한 여가생활을 하는 것
- 건강하게, 먹고살 걱정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 29조

### 거주시설·주간활동·돌봄 지원

우리나라는 발달장애인이 시설에서 지낼 경우 자신에게 맞는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발달장애인이 낮에 활동할 수 있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발달장애인이 말하는 사회참여활동

- 혼자서 어디 다닐 수 있는 것, 가고 싶은데 가는 것
- 마음껏 여행을 즐길 수 있고, 마음껏 기부를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간섭 없이 즐겁게 활동할 수 있는 것
- 가고 싶은 곳에 가고, 특수학교 친구들과 어울려서 놀러가는 것

쉽게 읽는  
발달장애인법



## 4장

# 발달장애인 가족을 돕는 것

## 30조

### 보호자에게 필요한 정보 알려주기

우리나라는 발달장애인의 보호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고 모르는 것을 가르쳐줄 수 있다.



## 31조

### 발달장애인 가족의 고민을 들어주는 것

우리나라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고민에 대해 상담해줄 수 있다.



## 32조

### 발달장애인 가족이 실 수 있도록 돕는 것

우리나라는 발달장애인 가족이 실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가족 대신 발달장애인을 돌볼 수 있게  
지원할 수 있다.

또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여행, 캠프 같은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의 동생, 형, 오빠, 누나, 언니에게 필요한  
프로그램도 지원할 수 있다.



쉽게 읽는  
발달장애인법



## 5장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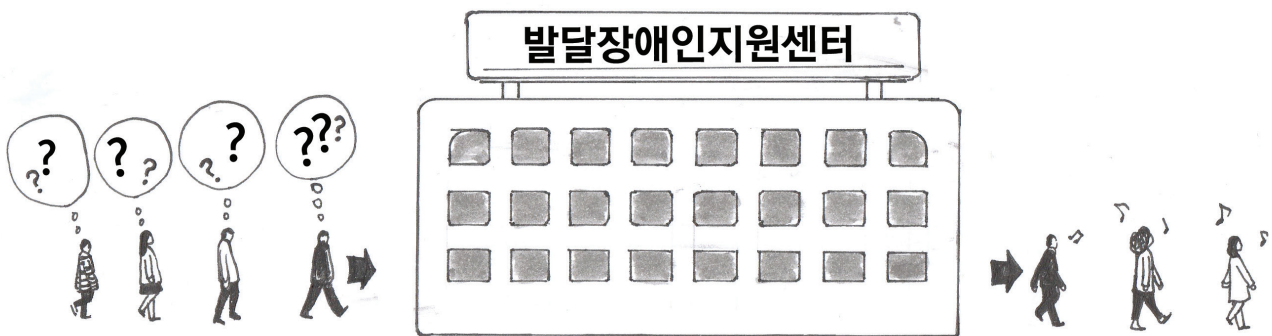
## 33조, 34조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권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곳이다.

우리나라는 시, 도마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세워야 한다.

시, 도에 있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대표하는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도 세워야 한다.



##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하는 일

**1**

발달장애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계획한다.

**2**

발달장애인이 필요한 정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3**

발달장애인의 가족과 발달장애인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교육한다.

**4**

발달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의 정보를 모은다.

**5**

발달장애를 일찍 발견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알린다.

**6**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어려움, 고민을 들어주는 상담을 한다.

**7**

발달장애인의 후견인을 지원하고 감독한다.

**8**

발달장애인이 괴롭힘을 당한다는 신고를 받으면 출동해서 발달장애인을 돕는다.

**9**

그 외에도 발달장애인을 위해서 필요한 일을 한다.



###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

1.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변호사 등 발달장애인을 잘 이해하는 전문가
2. 발달장애인 당사자 (다른 발달장애인에게 도움이 되는 상담, 교육을 한다.)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 제작배경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발달장애인법)〉이 2014년에 제정되면서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을 권리로 바라보기 위한 첫걸음으로써 이 책, 『반갑다, 발달장애인법』이 시작되었습니다. 발달장애인법 제10조에서는 ‘권리’라는 도구를 통해 의사소통 지원을 제도적 의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11월 21일, 이 법이 시행됩니다.

발달장애인은 착하고 순수하거나 두려운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것을 힘들어하거나 불편해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의사소통이 어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신체적 장애인이 사회 안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편의제공이나 이동을 하나의 권리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발달장애인이 세상과 연결고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필요한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것 역시 권리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의사소통 지원은 알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며  
정보에 대한 접근성, 자기결정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사회통합을 위한 첫 단추를 끼우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는 바로 『반갑다, 발달장애인법』을 만드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 목표

이 책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세운 목표는

첫째, 법에서 규정한 어려운 글자들을 발달장애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의 권리를 맞춤형으로 보장하는 것,

둘째, 발달장애인이 필요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옹호가이드북으로 자기옹호를 지원하는 것,

셋째, 쉬운 자료를 통해 발달장애인이 갖고 있는 권리와 필요한

지원 내용에 대해 사람들의 접근성을 높여 발달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지원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을 위해,

또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다양한 자료들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에서도

제작되었으면 합니다.



## 제작과정

이 책은 글에 대한 이해, 그림과 도식 등에 대한 상징이나 의미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을 위하여 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발달장애인이 읽고 활용할 수는 없다는 제한점이 있습니다. 다만 발달장애인을 위해 제정된 법을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제작하는 것, 그 자체를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접근성을 좀 더 고려하여 동영상과 e-북으로 따로 구성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자료는 많은 사람이 활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공개되고 배포됩니다.

지난 1년 간 총 17차례의 회의를 통해

이 책의 기초가 만들어졌습니다.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법의 내용을 공부하며

쉽게 바뀌나가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또한 법의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담으면서도 더 많은 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법조인, 학자, 특수교육 전문가, 발달장애인 옹호 단체 관계자,

인권옹호 활동가 등으로부터 자문과 감수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당사자 집단으로부터

이해를 돕기 위한 자문과 감수를 거쳐 이 책이 완성되었습니다.

## 제작원칙

『반갑다, 발달장애인법』을 기획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첫 번째 원칙은 평등한 협력관계와 참여입니다. 함께 작업한 제작 위원들은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동등하게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의 조항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며 토론을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작은 갈등도 발생하고, 의견이 대립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장애 유무에 따른 차이보다는 각각 개인으로서 다름을 주장하고 조력이 아닌 공동작업 과정으로서 ‘함께’ 만들어가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발달장애인이 생의 주기에 따라  
적합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유아적인 표현방식, 어휘사용을 지양하고자 했습니다.  
다만 제시되는 단어는 초등교과 어휘 수준에 맞추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한편, 발달장애인법에 의해 새로 생기는  
고유명사 등의 어휘는 낯설고 난해하더라도 그대로 사용하되  
주석을 통해 의미를 전달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발달장애인지원센터, 행동발달증진센터처럼 발달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기관 명칭은 실제 편의를 돕기 위하여  
쉬운 표현으로 바꾸지 않고 따로 주석을 사용해 설명했습니다.

셋째, 전체 구성과 편집, 디자인에 있어서도 발달장애인이 필요할 때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형식을 갖추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발달장애인이 읽기 쉬운 내용과 디자인은 많은 사람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보편적 설계이기도 합니다. 권리를 가진 사람과 권리를 보장해줄 의무를 가진 사람 모두가 알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자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반갑다, 발달장애인법』은 모든 발달장애인이 이 법을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다양한 관점과 방법의 업데이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직 미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책이 작은 계기가 되어,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정책정보가 앞으로 다양한 버전으로 활발히 개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향후바람

이 책은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읽고 이해하기 쉬운 책이 되는 데 그치지 않고,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이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옹호가이드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발달장애인이 갖고 있는 권리와 필요한 지원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은 다양한 매체 뿐 아니라  
관계적 맥락 안에서의 인적 지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사회의 모든  
사람이 의사소통 지원을 하나의 권리로서 인식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5년 11월  
『반갑다, 발달장애인법』 제작위원  
김선교, 김종안, 김지윤, 백정연, 성명진, 송상원, 주명희

**발달장애인법을  
쉽게 알려주는 책**

## 『반갑다, 발달장애인법』

**발행일** 2015년 11월 21일

**발행처** 한국장애인개발원

**발행인** 황화성

**편집인** 노석원

**제 작** 김선교, 김종안, 김지윤, 백정연,  
성명진, 송상원, 주명희

**기획·진행** 주명희

**자 문** 김치훈, 염형국, 이정은, 최복천

**감 수** 김도현, 김종옥, 박인용, 송남영, 이경아, 조문순,  
구로 코브라 자조모임, 송파 청소년 자조모임

**디자인·삽화** 로사이드

**영 상** 윤성덕

**인 쇄** (사)한국척수장애인협회

**I S B N** 9788969211927 93330 (비매품)

주소 (07236)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5층 한국장애인개발원

대표전화 02-3433-0600

홈페이지 [www.koddi.or.kr](http://www.koddi.or.kr)

문의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02-3433-0745, [www.broso.or.kr](http://www.broso.or.kr))

© 이 책의 저작권은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있으며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